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변경사유서

1. 사유

: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의 목적에 대한 정비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대한 산학협력단의 업무 범위 확대 그리고 사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 및 회계 관련 일부 규정의 정비 필요

2. 주요골자

-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의 “목적” 정비
 - 목적 주체를 ‘정관 규정의 목적’에서 ‘법인 설립의 목적’으로 변경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규정 및 미반영 규정에 대한 반영
 - 산학협력단 업무범위 및 수입·지출에 대한 범위 확대
 -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 산학협력단의 결산 및 감사에 대한 규정사항 정비
- 산학협력단의 조직에 대한 운영 및 수당에 대한 내용 정비
 - 산학협력단 사업의 확대 및 다변화에 따른 산하 조직(센터 등)의 신설 및 사업별 인력수급이 요할시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사업의 성과 및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임
- 정관 누락 부칙 재정비

3. 심의(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의결) : 원안가결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변경(안)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정관 제·개정 이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정 2004. 03. 01.

개정 2012. 03. 20.

개정 2016. 01. 01.

제1조 중 목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부천대학교 학칙에 따라 산학연협력 관련 체계적인 지원으로 부천대학교의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에 대한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 3.~6. (생략)
7. 산학연협력수요 및 활동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8. 산학연협력사업 및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9.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 정신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1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의 따른 협력연구소 간의 상호 협력 활동 지원
11. 정부 및 지자체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 및 유아교육 또는 보육에 대한 위탁관리사업
12. 대학의 교지 안에 설치·운영되는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3.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이사) 산학협력단에는 1인의 이사를 두며, 산학협력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이사가 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산학협력단에는 1명의 단장을 두며, 단장은 부천대학교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임면한다.
- ③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수당) 단장은 필요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학협력단 소속 교직원 및 연구원 등에게 직책수당 및 업무수당 등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총장은 단장과 협의하여 산학협력단 직원 및 연구원 등으로 하여금 대학교의 교육·연구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③ 총장은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 중에서 단장이 필요로 하는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7. 이자수입 및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실습 시설 및 장비의 사용료
8.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9.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10.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학 시설 및 운영 지원비

5.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관리 및 기술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대한 경비
6.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7.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
8.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9.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산학협력단의 결산)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산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의 “제17조의7 제3항” 을 “제21조 제3항” 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감사) 단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교 직원이나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산학협력단의 재산 상황과 회계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 이 정관의 효력발생 시기는 2004년 3월 1일로 한다.

제2조(소급적용)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지적재산권 등의 이전) 대학의 장은 이 정관의 효력 발생 시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가운데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6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